

Deloitte.



**Essential Investment Gateway
into Indonesia (EIGI)**
한국어

Deloitte Indonesia

목차

A. 인도네시아 소개	4
1. 개관	
2. 인구통계	
3. 투자환경	
4. 산업 개관 및 기회 소개	
5. 지역별 정보	
B. 투자 단계 확인 : 조직 발전을 위한 5 단계	14
C. 법인설립	15
1. 일반 투자 정책	
2. 법인의 형태	
3. 투자 절차	
4. 인수 및 합병	
5. 사업 관련 규제	
D. 인도네시아 조세제도	21
1. 조세 인센티브	
2. 조세 관련 행정절차	
3. 사업 조세	
4. 개인 조세	
5. 간접세	
6. 원천징수세	
E. 회계감사 & 컴플라이언스	42
1. 회계기간	
2. 통화	
3. 언어와 회계기준	
4. 감사 요구 사항	
5. 독립성	
F. 노동환경	44
1. 직원 권리 및 보수	
2. 급여 및 복리후생	
3. 근로 관계 해지	
4. 노사관계	
5. 외국인 고용	
About Deloitte	47
Contacts	50

머리말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하여 신규투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아세안 창립 멤버로서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는 아세안의 목적에 공감합니다. G20 주요의제 중 하나인 자유무역 환경하에서,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지역에서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전세계의 성장과 재무적 안정성을 목표로 G20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을 대표하는 인도네시아는 G20내에서도 “큰 형님”으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포함하는 여러가지 정책들이 투자 확신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현지 및 국제적 투자자와의 파트너십을 고취하는 계획, 프로그램, 및 법 제정이 계획되고 준비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서 현 정부는 경제적인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및 Paket Kebijakan Ekonomi라는 여러 경제 개혁 패키지를 발표하여 국가를 변화시킴으로써,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5,000MW의 전기 개발 또한 인프라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투자자를 유치할 것입니다. 이는 2018년 정부 업무 계획(Rencana Kerja Pemerintah)에서 “성장과 평등을 위한 투자와 인프라 구축”이라는 주제로 다시 강조되었습니다.

< Essential Investment Gateway into Indonesia (EIGI)> 는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빠르고 명확한 대답을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 책자의 편찬에 기여한 딜로이트 인도네시아 전문가팀에게 큰 감사를 전합니다.

본 책자는 장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자주 문의하는 사항(‘어떻게’ 뿐만 아니라 ‘왜’ 와도 관련됨)에 대한 저희들의 질의응답 경험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 책자는 모든 장래 투자자들에게 많은 영감과 지식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하며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많은 기회들을 발굴하는 데 주요한 수단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Claudia Lauw Lie Hoeng
Country Leader
Deloitte Indonesia

A. 인도네시아 소개

Republic of Indonesia (executive presidency)

민족: 인도네시아인 (40.1%의 자바인, 15.5%의 순다인, 3.7% 말레이, 3.6%

바타크, 3% 마두라인, 2.9% 베타워, 31.2%의 기타 종족)

언어: 인도네시아어, 영어 (business, professional), 지역 방언

통화: 인도네시아 루피아 (IDR)

Total Area : 1,904,569 sq km (15th largest)
Land : 1,811,569 sq km
Water : 93,000 sq km
Population: 252,164,800 est 2014 (4th largest)



Major Islands : Sumatera, Java, Kalimantan (Borneo), Sulawesi (Celebes), and Papua
Minor Islands : Maluku, Lesser Sunda Islands (Nusa Tenggara)

1. General Overview

300개 이상의 소수 민족으로 구성된 다양한 군도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계속해서 동남아시아에 최대 경제국 중 하나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며 구매력 평가에서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경제국이며 G-20 회원국이다.

2017년에 전체 평균 실질 GDP는 5.1%로 전망된다. 향후 5년 (2017-2021) 간, 민간 투자 (인프라 및 제조)가 국가경제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경제는 민간 소비에 의해 뒷받침 될 것이며 향후 5년 동안 평균 5.2%의 성장이 예상된다.

물가상승률의 경우 2015년의 6.4%에 비해 2016년에는 3.5%로 감소되었으며, 2021년까지는 연평균 4.2%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에 통화는 상대적으로 안정하게 유지 될 예정이다.

경제성장 지표

Indicator	2016 ^a	2017 ^f	2018 ^f	2019 ^f	2020 ^f	2021 ^f
GDP Growth (% , y-o-y)	5.0	5.1	4.8	5.0	5.0	5.3
민간소비(% , y-o-y)	5.0	5.1	5.1	5.0	5.5	5.3
정부소비 (% , y-o-y)	0.5	3.5	2.0	3.0	5.2	5.2
투자 (% , y-o-y)	4.5	5.2	4.6	4.6	5.0	5.0
수출(% , y-o-y)	-1.8	4.7	1.4	3.8	3.2	4.4
수입(% , y-o-y)	-2.4	4.0	2.3	1.9	2.3	4.0
물가상승률(% , y-o-y)	3.5	4.0	4.6	3.9	4.3	4.4
미국 달러화 환율	13,436	13,458	14,165	14,200	13,975	13,800

^aActual /^fForeca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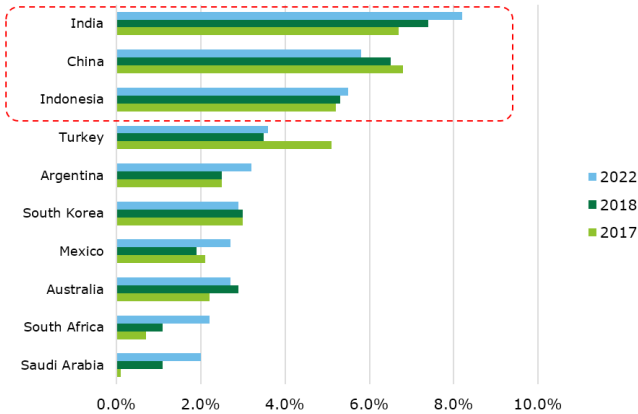
Table: Government Macroeconomic Assumptions

국가의 투자 환경 및 경제 성장을 강화되기 위해, 정부는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려는 정책 개혁, 장려책,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가장 중요한 경제 개혁은 16개의 경제 개혁 패키지며 2017년에 발표된 2개의 신규패기지는 물류 체류 시간을 2.9일에서 2일로 줄이고 사업허가증을 단일 제출 시스템으로 가속화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인도네시아의 GDP는 2015년에 USD 8,611억에서 2016년에 USD 9,321억까지 8.2%의 증가하였으며, 1인당GDP는 5.4% 증가하였다. RPJPN(장기적인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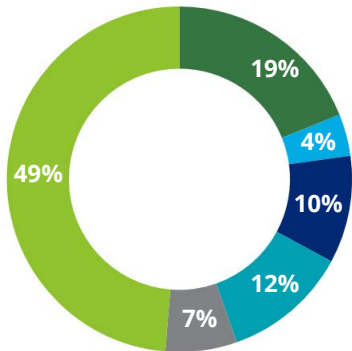
발전 계획)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25년까지 중진국 수준의 일인당 평균소득을 달성할 예정이다. GDP에 가장 큰 공헌을 하는 것은 제조업 부문이며 GDP의 총액의 58%를 차지한다.

Top 10 Real GDP Growths Among G-20 Countries Projected by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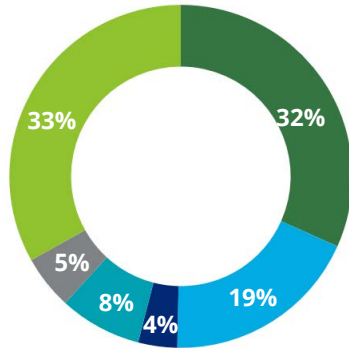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IMF 프로젝트는 G-20 국가 중에 Top 3 빠른 경제 성장을 전망한다.

FDI Realization 2016 by Lo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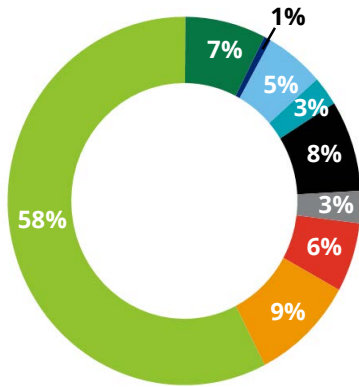
- West Java
- East Kalimantan
- Banten
- DKI Jakarta
- East Java
- Others

FDI Realization 2016 by Country of Origin



- Singapore
- Japan
- South Korea
- Hong Kong
- Netherlands
- Others

FDI Realization 2016 by Se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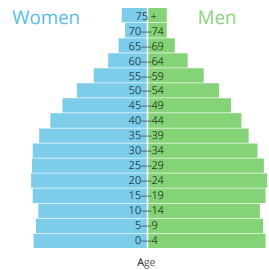
- Agriculture, hunting, forestry and fishery
- Mining and quarrying
- Manufacturing
- Electricity, gas, and water supply
- Construction
- Wholesale and retail trade, restaurants, and hotels
- Transportation, warehousing, and communications
- Real estate and business services
- Community, social, and personal services

Source: Indonesia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2017

2. 인구통계

인도네시아는 34개의 지역, 만 7천여 개의 섬과 2억 5천만여 명의 인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 인구 4위 국가이다. 2억5천만 명의 인구적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인구의 60%가 20-65세이며 부양 비율은 낮고 문맹률이 낮으며 역동 적임;
- 인구의 약 52%가 도시지역 거주;
- 인도네시아 인구는 동남아 10개국 총인구의 39% 이상을 이루고 있음.



Source: Mars, 2013

취업인구는 총인구의 0.8% (2017 예상)로 235개국 중 124위이다. 인도네시아는 빠른 성장성을 갖고 있는 소비력이 큰 소비층을 보유하고 있다. 매년 약 700만 명씩 중산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지출은 2000년에서 2012년 사이에 연평균 성장률 13.8%로 증가했지만 2012년에서 2017년까지 11.5%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3. 투자 환경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성공의 큰 부분은 발전적인 중산층 및 경제의 안정적 성장의 결과다. 인도네시아는 MINT (멕시코,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터키) 의 멤버고 좋은 인구 프로파일덕택으로 장기 투자자에게 가장 매력적인 나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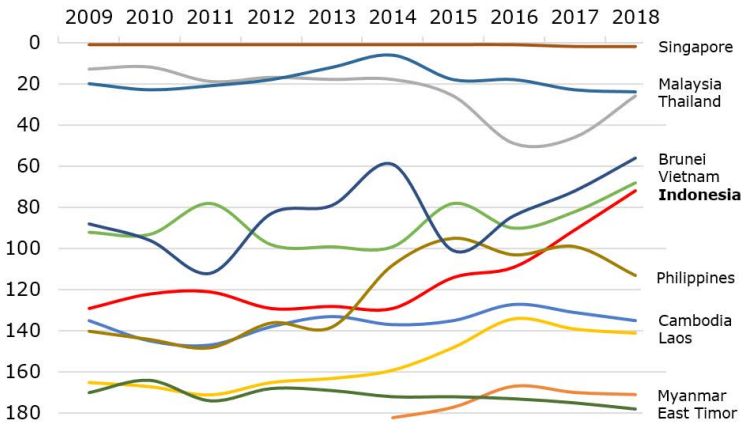
인도네시아의 채무와 GDP 비율은 2001년의 83%에서 2013년 말까지 26% 이하로 감소했으며 국가채무가 없는 싱가포르를 빼고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에 가장 낮은 GDP 대비 부채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 결과로 인도네시아는 지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왔고 1997년 이래 처음으로 3대 글로벌 신용 평가 기관으로부터 투자 등급으로 간주되고있다. 등급평가는 세계금융위기로부터의 회복력, 개선 되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외부 신용도, 국내정치 조정력 등을 반영한다.

평가 기구	비율	전망
피치 레이팅	BBB-	Stable
무디스	Baa3	Stable
스탠더드 앤드 푸어	BBB-	Stable

Source: Indonesia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BKPM),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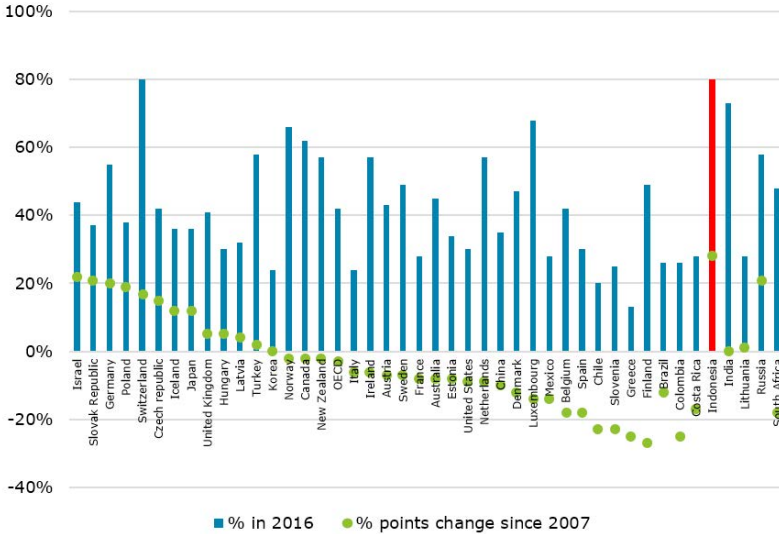
세계 은행 (World Bank)에 의한 기업환경평가에서 인도네시아가 190개국 중 72 위로 평가되며, 2017년 91위에서 19순위가 인상되었다.

Southeast Asia Ease of Doing Business Rankings 2009-2018



2016년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높았으며, OECD 국가 평균은 42%수준이었다.

Confidence in National Government in 2016 and Its Change Since 2007



Source: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7

4. 산업 개관

인도네시아 모든 주요 사업 분야의 중요한 역할로 인해 인도네시아 경제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역사적으로 농업이 고용과 생산 측면에서 주요한 부문이 되고 있으며 지난 40년간 개발해 왔던 광범위한 광물자원 보유로 인해 광업 분야가 인도네시아 국제수지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다각적인 무역 경제를 가지고 있다. 석유 및 가스는 이 나라의 가장 큰 수출 부문이고 석탄 (및 기타 광산물), 야자유, 농작물, 전기 기계 및 장치, 광물 연료, 수산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 상품의 생산을 증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부가가치창출산업 및 인프라스트럭처 개선 등에 보다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수 소비에 있어 핵심적인 원자재 생산 증대 및 높은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 다양한 산업을 연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산업에 높은 성장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 또한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가치 사슬에 진입하여 전자상거래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알리바바그룹을 자문사로 선정하였다.

2015~2019 전략적투자계획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몇가지 분야에 새로이 주목할 것을 제시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인프라		35 GW 규모의 발전	24개의 항구		
농업		음식	옥수수 농장	소	
산업	노동집약적	섬유	식음료	가구	장난감
	수입대체적	화학및제약	철강	부품	
	수출지향적	전자제품	CPO와 부산물	목공품, 펄프와 종이	자동차
		기계류	고무제품	물고기와 부산물	새우
천연자원 관련 후속산업	카카오	설탕	제련		
해양산업		조선업	어업	냉동창고	해사기술
관광권, 경제특구 및 산업단지		전략적 관광지구	미팅, 인센티브관광, 국제적컨퍼런스 및 전시회 관련 (MICE)	8+11 경제 특구	15개의 신규 산업단지

인프라스트럭처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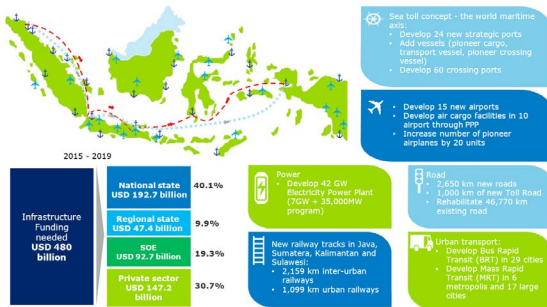
신정부는 섬과섬사이의 연결성 개선을 계획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서부와 동부의 균형 잡힌 발전을 장려하고 있다.

정부는 높은 물류비용을 낮추게 하기 위하여 서도에서 동도 사이에 중심 경로의 항구를 통해 인도네시아 다도해를 연결하도록 'sea toll road' 개념을 도입했다.

또한, 정부는 도로, 유료 도로, 공항, 철도를 더 많이 건설할 예정이며 자바 섬 뿐만 아니라 수마트라 섬, 칼리만탄 섬, 술라웨시 섬, 파푸아 섬을 포함할 계획이다.

추가 인프라스트럭처 개발은 중국의 개혁 및 해외진출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그 중에 핵심은 One Belt One Road Initiatives (OBOR)로서, 이는 국외 정책과 국내경제전략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당초 특정지역에 국한한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로 알려졌었던 이 계획은 현재까지 계속 확장되어 왔으며 이제는 아시아대륙에 걸쳐서 폭넓은 협업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 또한 포함하고 있다. 자카르타-반둥 구간의 고속철 프로젝트는 중국의 첫번째 속원사업이었으며, 교통부로부터의 승인을 기반으로 노선이 점차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ource: Ministry of Transportation RI, May 2016

5. 지역별 정보

투자에 적합한 지역을 찾고있거나 현재의 사업규모를 확대하려는 투자자들을 위해, 10개 지역을 선정하여 각 지역들의 연간GDP 및 외국투자관련 몇가지 지표를 소개하고자 한다.

Top 10 Regional Demographics

Province	Provincial Capital	Area (sq km)	No. of Islands	No. of Regencies	No. of Cities	Population (in thousands) (2016)
DKI Jakarta	Jakarta	664.0	287	1	5	10,277.9
East Java	Surabaya	47,799.8	287	29	9	38,075.3
West Java	Bandung	35,377.7	131	18	9	47,379.4
Central Java	Semarang	32,800.7	296	29	6	34,019.1
Riau	Pekanbaru	87,023.7	139	10	2	6,501.0
North Sumatera	Medan	72,981.2	419	25	8	14,102.9
East Kalimantan	Samarinda	129,066.6	370	7	3	3,501.2
Banten	Serang	9,662.9	131	4	4	12,203.1
South Sulawesi	Makassar	46,717.5	295	21	3	8,606.4
South Sumatera	Palembang	91,592.4	53	13	4	8,160.9

Top 10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USD mn

Province	2012	2013	2014	2015	2016	% Total 2016
DKI Jakarta	141,617	126,908	141,497	143,778	162,036	17.2%
East Java	129,138	113,422	123,778	122,500	138,065	14.7%
West Java	116,675	103,289	111,442	110,558	122,997	13.1%
Central Java	78,028	68,095	74,373	73,510	81,276	8.6%
Riau	57,755	49,840	54,613	47,292	50,785	5.4%
North Sumatera	43,136	38,515	41,958	41,444	46,769	5.0%
East Kalimantan	56,953	42,590	42,355	36,380	37,740	4.0%
Banten	34,977	30,998	34,443	34,646	38,429	4.1%
South Sulawesi	23,608	21,235	24,086	24,773	28,223	3.0%
South Sumatera	26,191	23,000	24,608	24,119	26,453	2.8%
Total	708,076	617,893	819,534	903,310	732,774	77.8%

Top 10 Regional FDI by Value

USD mn

Province	2012	2013	2014	2015	2016
DKI Jakarta	4,108	2,591	4,509	3,619	3,398
East Java	2,299	3,396	1,803	2,593	1,941
West Java	4,211	7,125	6,562	5,739	5,471
Central Java	242	464	463	850	1,031
Riau	1,153	1,305	1,370	653	869
North Sumatera	645	888	551	1,246	1,015
East Kalimantan	2,014	1,335	2,146	2,381	1,140
Banten	2,716	3,720	2,035	2,542	2,912
South Sulawesi	583	463	281	233	373
South Sumatera	786	486	1,057	646	2,794
Total Top 10	18,756	21,773	20,775	20,504	20,942
Total FDI by value	24,565	28,530	28,530	29,276	28,964

Top 10 Regional FDI by No. of Projects

Province	2012	2013	2014	2015	2016
DKI Jakarta	1,148	3,028	3,053	4,463	6,751
East Java	403	636	497	742	1,473
West Java	682	1,542	1,671	4,497	5,369
Central Java	141	199	224	608	1,054
Riau	81	168	129	243	394
North Sumatera	133	347	249	438	688
East Kalimantan	167	332	191	406	466
Banten	405	592	709	1,737	2,161
South Sulawesi	29	88	58	165	309
South Sumatera	107	142	114	135	251
Total Top 10	3,296	7,074	6,895	13,434	18,916
Total FDI projects	4,579	9,612	8,885	17,738	25,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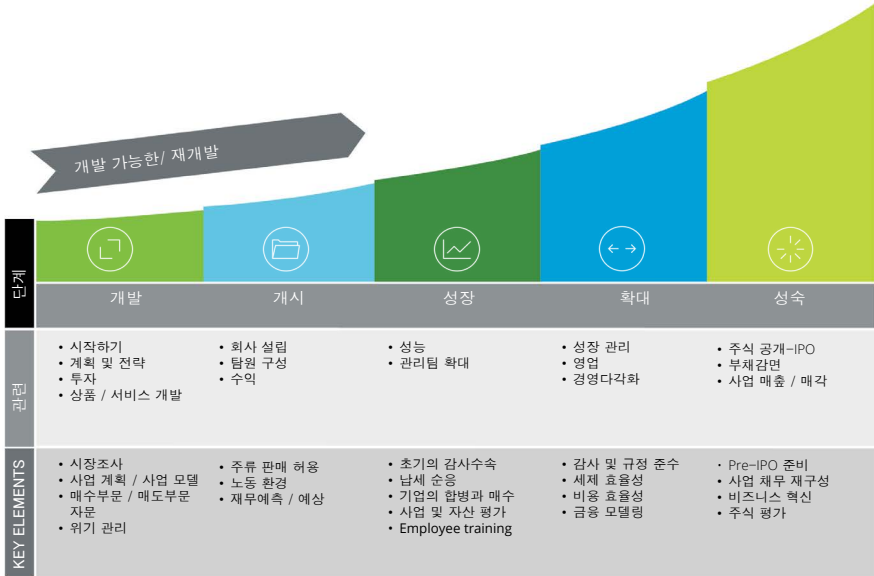
Top 10 Provincial Minimum Wage (UMP) per Month

USD

Province	2012	2013	2014	2015	2016
DKI Jakarta	158.1	180.5	196.2	195.7	230.7
East Java	77.0	71.1	80.4	72.5	N/A
West Java	80.7	69.7	80.4	72.5	167.5
Central Java	79.1	68.1	73.2	66.0	N/A
Riau	128.0	114.9	136.7	136.1	155.9
North Sumatera	124.1	112.8	121.0	117.8	134.9
East Kalimantan	121.7	143.7	151.6	146.9	160.9
Banten	107.8	96.0	106.5	116.0	132.8
South Sulawesi	124.1	118.1	144.7	145.0	167.5
South Sumatera	123.6	133.7	146.8	143.1	164.2

B. 투자 단계 확인

조직 발전을 위한 5 단계



C. 회사설립: 시작하기

1. 일반 투자 정책

기업환경

인도네시아는 중국, 한국, 인도, 호주 및 뉴질랜드와 함께 ASEAN 자유무역협정의 회원국이다. 2007년에 인도네시아와 일본은 인도네시아-일본 경제협력협정에 서명했다.

가격관리

일부 품목과 서비스는 여전히 “가격 관리 대상”으로 분류된다. 석유, 전기, LPG, 담배, 시멘트, 병원업, 의약품, 음료수, 시내 운송, 항공 운송, 전화료, 기차, 소금, 통행료, 우편요금에 여기에 포함된다.

지적재산권

인도네시아 지적재산권법은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및 의장권을 인정한다. 허가자와 허가 소지자는 침해를 고소할 권리가 있다. 민사사건으로 상업 법정에 배정하며 중재를 통한 해결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 등록은 의무다. 상표 보호는 10년간 유효하고 10년 추가기간으로 연장될 수 있다. 표준 특허는 20년간 유효하고 단순 특허는 10년간 유효하다.

금융 및 재무

1998년에 개정된 1992년의 은행법은 시중 은행 및 지방 은행 (BPR) 등 2가지 일반 은행을 허용한다. 간단한 은행 업무를 하는 BPR는 소규모로 운영하고 저소득층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외국환거래가 특별한 자격증과 허가증을 요구하지만 시중 은행은 다양한 은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다. 시중 은행과 지방 은행은 전통은행업 또는 이슬람은행업 둘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있다. 중앙은행은 Bank Indonesia이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금융가는 자카르타, 스마랑, 반둥과 수라바야(주요 섬인 자바 섬에 있음), 메단과 팅렘방(수마트라섬에 있음), 덴빠사르 (발리섬에 있음) 그리고 마까사르(술라웨시섬에 있음)에 위치한다.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의 오프쇼어 금융의 역할을 한다.

해외 투자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PKM)은 인도네시아 외국인투자 및 국내 투자의 촉진과 허가를 책임진다. 다른 정부기관이나 부처는 석유 및 가스, 은행 및 금융 투자를 관리한다. 투자조정청이나 해당시도협회는 외국 및 국내 투자의 모든 부문을 승인한다. 외국법인은 대표사무소(RO)를 개소하거나 주식회사(PMA)를 설립함으로써 인도네시아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투자조정청(BKPM)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주식회사는 다음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식회사법 제40조 (2007): 최소주주구성, 이사회 이사의 수, 정관 등
2. 투자법 제25조 (2007): 투자관련 규칙 및 투자활동 관련
3. 투자제한리스트 (NIL) 제44조 (2016): 투자가 금지된 업종 및 투자지분을 제한 업종 등에 대해 열거한 리스트 많은 사업부문이 투자가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각각의 부문은 최대보유가능지분을 관련하여 제한이 있다.

국가이익을 위하거나 보상이 지불되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 투자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국영화하거나 허가를 취소하지 않는다.

외환관리

국내 통화인 루피아는 자유롭게 바꿀 수 있지만 1억여 루피아를 국외로 반출하기 전에 Bank Indonesia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Bank Indonesia의 인가는 현금 인출기 시험과 해외 박람회 그리고 은행이 인식하는 공익을 피하는 목적을 위해 제공된다.

1억여 루피아를 운반하는 사람은 인도네시아로 도착 즉시 인도네시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은행으로부터 1억 루피아 이하의 전신 송금 요청에는 고객이 서명한 공식 증빙이 첨부되어야 한다. 10만 달러 이하의 송금시에는 신고서가 필요하다.

루피아에 대한 외화 매매 교환 거래 금액이 USD 25,000 이하인 경우 거래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증명서가 필요하며 거래 금액이 USD 25,000을 초과하는 경우 근거거래의 고객으로부터 얻은 문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외국으로부터 또는 외국으로 외화자금이체를 제한하지 않지만 인바운드 투자 자본은 허가를 요구한다. 은행이 국가의 외환 노출 monitor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월례 보고서와 함께 외채를 Bank Indonesia에 등록하여야 한다.

국내 민영은행은 외국환거래에 대한 월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하지 않을 경우 금전적 벌칙이 부과되거나 면허가 취소 될 수 있다. 외국환거래에 대한 월례 보고서를 지연 제출할 경우 늦게 제출하면 일 500만 루피아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외국환거래 미보고는 1억 루피아 벌금이 부과된다. 6개월 간 보고서 제출하지 않으면 은행업인가가 취소된다. 금융기관도 외국환거래의 월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연 제출시 일 100만 루피아 벌금이 부과되고 미보고는 2000만 루피아 벌금이 부과된다.

비금융기관은 금융자산 움직임 (예를 들어 해외기업의 자본과 해외은행 예금 등), 거주자와 비거주자사이에 부채 (예를 들어 해외 대출과 매입채무 등), 거주자의 해외 거래를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기준은 최소한 1천억 루피아의 총자산이나 최소한 1천억 루피아의 연간 매출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국내 은행이나 금융 서비스를 통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2007년 No. 25 투자법은 외국투자가 세호 순익, 특정 비용 또한 보상에 대해 송금할 전환을 보장한다.

인도네시아에 진행하는 현금 지불과 다른 금융거래에 만족한 결제 채무의 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루피아를 이용하여야 한다. 국가예산 이행, 해외 지원금 수령, 국제상거래, 외화예금, 해외 차입금 거래, 등과 관련된 거래에 면제가 적용된다.

2. 기업형태

주식회사요건

Capital (자본): 2013년 No. 5 BKPM 규정에 따라 토지 건물을 빼고 1년간 운전자금, 기계, 등을 포함하여 최저 출자총액은 100억 루피아(약 USD 1,000만) 이고 최소한 USD 30만(25%)는 발행 및 납입 되어야 한다. 보통 3:1 범위 내에

부채자본비율은 허용된다. 특정 부문에 더 높은 수준 자본 규정이 적용된다 (예, 운송업 USD 200만). 모든 발행 자본은 지불되어야 하며 지불 증빙을 법무인권부에 제출해야 정관이 들어 있는 설립증명서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 뒤에 발행된 모든 주식은 전액납입되어야 한다.

외국인 투자회사의 경우에 자본의 루피아 가치는 투자허가 시점의 환율로 산정된다. 그러나 외화 자본금 납부의 루피아 가치는 지불 시점의 환율로 산정된다. 이러한 계산은 독립감정인이 평가한 현물 지불에 적용된다.

자기주식 매입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자기주식 매입금 지불이 순이익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 순자산이 납입자본금과 필요 총당금 합계금액 이하로 저하되어서는 안된다.
2. 회사나 그 자사들이 소유한 (또는 pledged in favour of) 총주식금액의 합이 총납입자본의 10%를 넘지 않음

자본의 증가와 감소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어야 한다. 감사도 채권자의 이익이 없어야 한다.

Founders, Shareholders (창업자, 주주): 회사법에 따라 주주는 항상 최소 2명 이상이어야 한다 (2명의 개인, 2개의 회사 또는 개인과 회사의 복합). 주주 책임은 출자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소수 지분의 최소 주식은 외국 주주 1%, 현지 주주 5%이며 최소 납입자본은 IDR10 억이다.

Board of directors/management (이사회제도): 회사는 적어도 이사 1명과 감사 1명이 있어야 한다. 어떤 기업들 (특히 공개 기업)은 적어도 이사 2명과 감사 2명이 있어야 하고 은행은 적어도 이사 3명과 감사 2명이 있어야 한다. 이사는 1명 이상이면 각자에게는 회사를 대표할 권리(정관에 언급된 예외 포함)가 있다. 외국이나 국내 합작 투자 사업에서 이사회 구성은 보통 외국자본에 대한 국내 자본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사들은 선의적으로 의무를 완수해야 하며 실질적인 회사 자산의 처분이나 지출 부담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어야 한다. 상기의 승인을 받기 위해 발행 주식의 최소 75%를 대표하는 주주가 총회에 참여하여야 한다.

최소한 발행 주식의 75%의 대표는 승인을 받기에 총회에 참여하여야 한다. 회사의 총발행주식의 최소한 10%를 집단으로 갖고 있는 하나 이상의 주주는 실수나 태만의 결과로서 회사가 해를 입은 것에 대한 민원을 이사나 감사에 회사 이름으로 제기할 수 있다.

연간보고서를 결재하고 이익 총당 또는 배당을 결정하기 위해 적어도 일년에 한 번 주주총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결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열어야 한다. 결정은 다수결로 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대로 한다. 이사나 감사에게 이임 될 수 없는 주주총회 기능은 정관 수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합병, 연결과 해산이다.

Taxes and fees (세금과 비용): 공증료는 회사의 수권자본의 0.1%~1%이지만 협상 가능하다. 설립 증명서에 명목 인지세가 부과된다.

Types of shares (주식 종류): 회사 자본은 분류가 다양한 출자자본으로 발행될 수 있으며 그 중 적어도 하나는 보통주여야 한다. 주식은 등기될 수도 있고 무기명도 될 수 있지만 전액 불입 전에 발행되지 못 할수도 있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 보유하는 모든 주식은 등록서에 있어야 한다. 보통주와 우선주는 허용가능이지만 우선주 후속 발행주식은 이미 우선주를 보유하는 자에게만 발행할 수 있다. 정관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으면 각 주식은 보통 한 표를 갖는다.

해외 회사의 지점

투자법에 따라 전적으로 또는 주로 인도네시아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소유 기업은 개별 사업단위로서 인도네시아 법규에 의해 조직하고 인도네시아 거주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 은행과 석유 & 가스 회사를 빼고 지점은 보통 허가되지 않는다. 특정 무역업, 건설업, 외국 뉴스기관, 등 다른 기업은 사무소로 설립할 수 있다.

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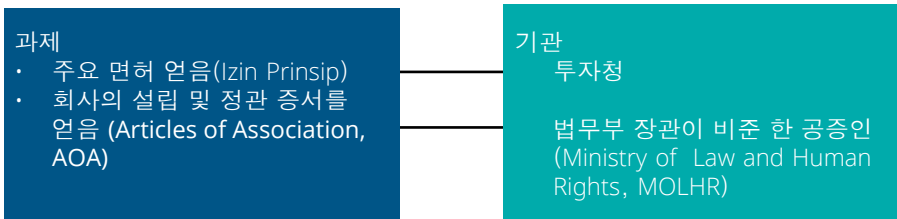
외국 회사는 무역대표 사무실을 설립할 수 있지만 투자조정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할 수 있는 대표 사무소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며 영업 사무소, 지사, 외국 건설 서비스 사무소를 포함한다. 무역대표 사무실은 기업 홍보나 시장 조사 업무만 할 수 있다. 금융부문을 제외한 지역 대표 사무실(RO) 설립 역시 투자조정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능한 활동은 감독과 조정제 제한되며 생산시설 또는 영업활동을 보유/ 유지하지 못 함으로 인해 계약 수주, 입찰 참여, 계약서 서명 또는 상품 수입이 금지다. 외국 건설업 대표사무소는 공공사업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Joint Operation을 통해 가능하다.

3. 투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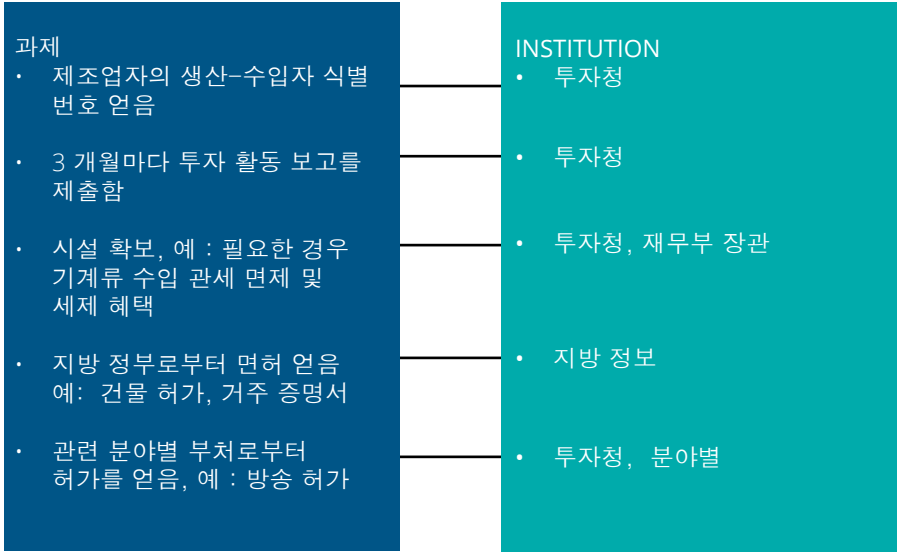
주식회사법 제40조 (2007)은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주식회사는 가장 일반적이며 보통 외국투자자들이 투자법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되는 영업형태이다. 외국계기업의 지점 설립은 통상 은행업이나 석유 및 천연 가스업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투자제한리스트 제44조 (2016)에 따르면, 특정 산업부문에 있어 외국인 투자 지분의 제한이 규정되어 있다. 특히 인프라스트럭처 부문에의 투자는 반드시 인도네시아 협력사와의 합작을 통해 이루어져야하며, 최소 67%의 지분은 협력사에 의해 투자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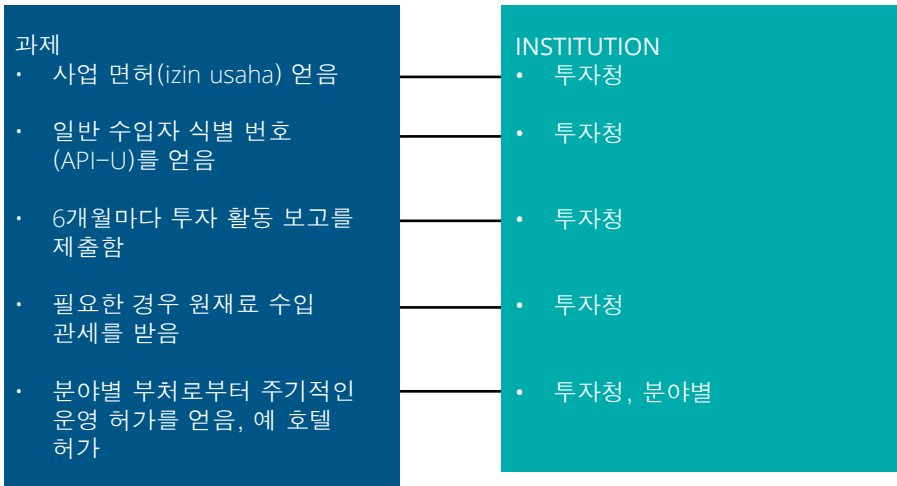
A. 준비단계



B. 영업점 단계



C. 영업 단계



4. 기업의 인수 및 합병

회사법은 기업의 인수, 합병, 취득, 분할을 규정한다. 합병은 보통 주주의 75%의 동의를 얻어 승인된다. 소수 지분 주주를 위한 주식 매각가격은 공정해야 하며 이를 위한 보호 장치가 제공된다. 존속회사가 회사명과 경영진을 유지하지 않으면 합병 회사는 새로운 회사명과 경영진을 채택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 합병은 하나 이상의 회사가 단일 존속 회사에 합병 (다른 회사의 해산을 계속 하면서) 해야만 가능하다. Consolidation의 경우 둘 이상의 회사가 새로운 회사에 합병되고 각 최초 회사는 해산된다. Acquisition의 경우는 개인 또는 기업이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하여 통제권이 이양되는 경우이다.

5. 영업관련규정

독점 및 거래 제한

독점및불공정경쟁금지법은 한 회사 또는 하나의 기업그룹의 50% 이상 국내시장점유를 금지하며 두 개 또는 세 개 회사나 그룹 회사의 75% 이상 시장 점유를 금지한다. 시장 점유는 판매량이 아닌 판매금액으로 결정된다. 관련 법은 경쟁에 대한 수직 제한 그리고 독점, 소수 독점, 가격 고정, 카르텔, 및 공급자들끼리 지역적 시장 독점을 가능하게 하는 계약을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마케팅이 공공복지와 국영기업에 필수적 사항으로 간주되어 소규모기업과 조합은 관련 규정에서 제외된다. 관련 규정 위반 회사에 대해서는 최대 IDR 1000억의 벌금 및 경영진은 6개월의 징역행에 처한다.

요건

인도네시아 회계기준에 따라 US달러를 기능 통화로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외국인투자기업 (PMA),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s, PE), 해외 계열사나 외국납세자를 둔 특정 기업은 재무부(Minister of Finance)의 승인을 얻어 영어와 US달러로 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 반면, 생산물분배계약 (Contractors of oil and gas Production Shring Contracts, PSC) 및 도급계약 (Mining Contracts of Work, MCS)의 통제 하에 있는 기업들은 서면 통보만으로도 영어와 US달러로 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 장부 작성 방법의 변경은 국세청(DGT)의 승인으로 가능하다. DGT는 회계 및 세무 관련 대금수수시 적용할 환율을 매주 설정한다. 장부, 각종 기록물, 연간 대차대조표 및 동 서류들의 사본은 인도네시아에서 최소 10 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익의 일부는 매년 사내유보해야하며, 자본금의 20%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D. 인도네시아 조세제도

1. 조세 인센티브

보세 장치장(Bonded Storage)

보세 장치장은 요건들이 충족되고 특별한 목적으로 물건을 보관하고 관세혜택을 얻는 건물, 현장 또는 지역으로 정의된다. 보세 장치장은 아래와 같은 형태를 취한다.

보세창고 (Bonded Warehouse)

보세 창고는 수입 물품을 보관하는 보세 장치장이지만 물건의 포장/재포장, 분류, 조립, 패키징, 조정 또는 재단 등의 활동이 부가될 수도 있다. 보세 창고 사업자가 보세 창고에 유입하는 수입품은 수입세 연기, 소비세 면제, 및/또는 수입세(VAT, LGST 및 Art. 22)의 형태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 시설들은 재수출 목적이나 인도네시아의 다른 세관관할구역 또는 보세 구역에의 지원 산업 (제조업) 목적으로 유입되는 상품에만 제공된다.

보세 구역 (Bonded Zone)

보세 구역은 생산 목적 수입품과 국내 저장품(이들의 생산량이 주로 수출 목적을 위함)을 저장하는 보세 장치장 구역이다. 보세 구역 또는 보세 구역으로부터의 물자 수입, 과세대상물의 유입, 물품 배송, 물자 방출, 과세대상물품의 재운송, 기계 대여 그리고 소비세의 대상이 되는 물자는 수입세 연기, 소비세에서의 면제 및/또는 수입세 무징수(VAT, LGST, 및 Art. 22)의 형태로 혜택을 받는다. 이 혜택들은 보세 사무용품품을 포함하여 구역의 사업자 (PDKB)가 사용할 자본재, 보세 구역에서 생산된 제품과 결합되거나 처리될 재료/제품에만 제공되는 혜택이다. 소모품은 보세 구역에서 이런 혜택을 받지 않는다.

각각의 허가 획득을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 특례 (Corporate Tax Facilities)

특정산업 혹은 특정 저개발 지역에 투자하는 회사는 다음의 법인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 유형고정자산(토지 포함) 투자금액의 최대 30%까지 6년간 매년 5%씩 소득공제
- 유무형자산의 가속상각 허용
-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세무상 이월결손금 공제가능기간이 10년으로 연장
- 관련 조세협약에서 더 낮은 세율을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거주자인 주주에 대한 배당 시 10%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법인세 특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높은 투자가치를 보유하고 있거나 수출지향적, 높은 수준의 고용창출, 혹은 풍부한 로컬 콘텐츠 등의 정성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동 특례를 신청하기 위한 개시 시점은 어떤 유형의 특례를 신청하려는가에 따라 상이하다. 재무부장관은 투자조정청의 추천서를 참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동 법인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 산업부문은 식품업, 직물업, 화학공업 분야이다.

Tax Holiday Facility (Tax Holiday 특례)

선도 산업에 신규로 투자하는 납세자로서 앞서 언급한 법인세 특례 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 투자법 제25조 18(5)항 (2007년)에 언급된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선도 산업이라 함은 국가의 거시경제 차원에서 큰 전략적 가치를 가지는 동시에 타 산업과의 광범위한 연계성이 있거나 높은 부가가치 및 외부효과를 보유하거나, 신기술을 소개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동 Tax Holiday 특례는 다음의 선도 산업에 적용된다.

업스트림 금속산업, 석유정제산업, 인프라스트럭처, 화학산업, 기계산업, 농업&임업&수산업 관련 제조업, 정보통신업, 해상운송산업, 경제인프라산업 등

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최소 Rp. 1조이상을 투자한 법인의 경우 법인세 감면 (10% ~ 100%)
-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첨단기술을 들여오는 경우로서 최소 Rp. 1천억 ~ 1조를 투자한 법인의 경우 법인세 감면 (최대 50%까지)
- Tax Holiday 적용가능기간은 영업활동을 개시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5년에서 최대 15년이다. 재무부의 승인하에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대상 산업의 전략적 가치와 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된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Tax Holiday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 신규납세자일 것
- 선도 산업에 속하는 사업허가를 보유할 것
- 선도 산업에 최소 Rp. 1조이상, 혹은 정보통신업에 최소 Rp. 5천억이상을 투자할 것
-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총 투자금액의 최소10%를 인도네시아 은행에 예치할 것 (투자계획의 실행 전까지 인출 불가능)
- 재무부장관이 규정하는 부채비율을 준수할 것
- 2011년8월15일 이후 유효 및 적법한 법적 실체일 것

신청서는 일단 산업부 장관이나 투자조정청장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관계기관 검토 후 2018년 8월 15일까지 재무부 장관에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Tax Holiday 특례는 승인 받은 소득에 한해 적용된다. 다른 소득들 (자본이득, 이자수익, 배당수익, 로열티수익, 임대수익, 채무면제이익, 재평가 이익, 기타 수익)은 여전히 관련 세법에 의거 과세대상이다. 두 가지 모든 형태로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납세자는 각 형태별 장부를 별도로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둘 중 한가지의 특례만 적용 받을 수 있다.
(Tax Allowance 혹은 Tax Holiday)

2. 조세행정

과세연도

법인의 과세연도는 회계연도이며, 개인의 경우에는 역에 따른다.

장부기장

일반적으로 컴퓨터 등에 보관된 것을 포함한 회계장부는 루피아 통화 및 인도네시아어로 유지되어야 하며, 10년간 보관해야한다.

인도네시아 회계기준에 따라 US달러를 기능 통화로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외국인투자기업 (PMA),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s, PE), 해외 계열사나 외국납세자를 둔 특정 기업은 재무부(Minister of Finance)의 승인을 얻어 영어와 US달러로 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 반면, 생산물분배계약 (Contractors of oil and gas Production Sharing Contracts, PSC) 및 도급계약(Mining Contracts of Work, MCS)의 통제 하에 있는 기업들은 서면 통보만으로도 영어와 US달러로 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 장부 작성 방법의 변경은 DGT의 승인으로 가능하다. 세무 목적으로 공인 회계사가 납세자의 회계 감사를 실시해야하는 법적인 요구 사항은 없다. 그러나 납세자가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DGT는 연간 납세 신고를 제출요구한다.

세무 신고 및 납부

비즈니스를 수행하거나 자유직업을 갖고 있는 납세자는 주기적 세금 납부가 근거가 되는 적당하고 정기적인 회계장부를 유지하여야 한다. 인도네시아에 고정사업장으로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외국기업은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납세자와 같이 법규를 준수한다.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기업은 인도네시아 납세자가 소득세를 원천 징수할 때 인도네시아 원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수행한다. 소득세신고서는 납세자, 사업, 거래유형별로 제출되어야 한다.

DGT는 세금 납부를 위해 온라인 e-Billing 시스템의 사용을 시행했으며 이는 이전의 신고 문서 절차를 대체한다. 납세자는 세금 납부를 용이하게하기 위해 특정 시스템을 통해 e-Billing 코드를 생성하여야 한다. e-Billing 코드는 특정 기간 동안 유효하며 세금 납부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코드를 제시해야 된다.

연결납세신고서

연결납세신고관련 규정은 없다..

제척 기간

조세 당국이 과소납부에 대하여 평가서를 고지하는데에 대한 제척기간은 5년이며, 형사범죄의 경우 10년이다.

과세당국

대부분의 세목은 국세청이 관리하며, 지방세는 주정부 및 districts와 같은 지역정부가 관리하고 징수한다.

국세청은 재무부 산하 부서이며 이 부서는 재정 정책에 대한 기술 지침과 절차를 만든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의무(예를 들어 납세순응감시, 세금징수, 카운슬링, 세무조사)를 관리하는 여러가지 단위가 있다. 이 단위들은 대, 중, 소 세무서로서

분류된다. 세무서의 담당자는 각 납세자를 위해 봉사한다.

통지

세법과 세무 절차의 적용이 불분명하면 납세자는 국세청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다. 국세청이 이와 같은 요청을 답하는 기간이 없다. 과세 규정은 청원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만 해당되고 기본적으로 세무조사 또는 세금납부반대적 납세자의 위치를 지원하기 위해서만 쓰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지는 다른 납세자에게 사용될 수 있다.

3. 사업 조세

개요

인도네시아에서 운영하는 회사에 적용되는 세금은 법인 소득세, 지점 이윤세, 원천 징수세, 부가가치세 (VAT), 그리고 토지세 및 인지세와 같은 기타 간접세다. 면세와 다양한 조세 특례는 자격이 있는 회사 (이상에 4.1 테이블과 같이)에 제공된다.

비과세 및 다양한 조세 특례는 특정 요건을 갖춘 법인에게 적용될 수 있다.

주로 세법은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토지건물세법 및 조세기본법이 있다. 조세는 국세청이 실행한다.

Indonesia Quick Tax Facts for Companies	
법인세율	25%
지점세율	20%
양도소득세율	0.1% - 25%
Basis	전세계
경영참여소득면제	있음
Loss relief	
- 차기로 이월 - 소급 이월	5년간 없음
이종과세방지	있음
연결납세	없음
이전가격규정	있음
과소자본정책	있음
해외 자회사 규칙	있음
과세연도	역년/회계연도로
역년 또는 회계연도	있음
세금의 예납	4개월까지

반납일자	
비거주자: - 배당금 - 이자 - 사용료 - 지점 이윤세	20% 20% 20% 20% 20%
거주자	2% (용역 및 설비임대료) / 10% (토지 및/또는 빌딩 임대료) / 15% (배당금, 이자, 로열티)
자본세	없음
사회보험부담	10.24%-11.74%
토지 및 건물	0.3% - 0.5%
토지 및 건물 취득세	5%
이전세	0.1%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매매); 5% (비거주자 주식거래); 매매가의 0%/1%/2.5% (토지 및/또는 건물의 양도)
최초 IPO	0.5%
인지세	IDR 3,000/6000
부가 가치세	10%

거주자

거주자로 간주되는 회사는 인도네시아에 설립되었거나 주소지를 두거나 또는 경영진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경우다.

세무 목적상 거주자로 간주되는 회사는 인도네시아에 설립되어 있거나 주소지가 인도네시아인 회사 또는 경영진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회사다.

세율

일반적으로 법인세율은 25%이다. 다만, 다음의 경우 감면된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1. 특정조건을 충족하면서 총 매출액이 연간 Rp. 48억을 초과하지 않는 납세자는 총 매출액의 1%의 최종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2. 총 매출액이 Rp. 500억이하인 법인납세자로서 거주자인 경우, 총 매출액 Rp. 48억까지는 50%만큼 감면된 법인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부채비용

재무부장관은 2016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부채비용 관련 규정을 도입하였다. 부채비용이 4:1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비용은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동 규정은 특정 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종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인프라스트럭처, 은행업, 보험업, 파이낸싱 산업 등). 본 규정은 국내나 해외에서 취득된 부채에 상관 없이 관련 부채 및 비관련 부채 모두에 적용된다. 또한 외국 민간 부채를 가진 납세자는 세무 당국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양도 소득세

양도소득은 경상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자본 손실은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매매는 거래가격의 0.1%의 과세가 적용된다.

주식 보유 또는 매각 여부에 관계 없이 최초 설립자 주식은 IPO시 주식 가치의 2.5%가 최종 분리 과세대상이 된다. 특정 거래, 예를 들어, 부동산 회사가 저가 주택 / 아파트를 판매 또는 이전(1%)하고 공익을 위해 정부에 양도하는 경우(0%)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토지 및/또는 건물 매매 또는 이전은 매각금액 5%의 최종 분리 과세 대상이 된다. 비거주자간의 인도네시아 비상장 주식 거래는 매매 금액 5%의 최종 분리 과세 대상이다. 단, 조세 협약이 있는 경우는 예외.

지점 이윤세

인도네시아에 위치하는 해외기업의 지점에는 표준법인소득세율이 부과되고 소득세를 뺀 순이익에 20%의 지점이윤세가 부과된다. PE의 순이익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재투자하면 지점이윤세면제를 받는다.

- 인도네시아에 주소를 둔 새로 설립된 회사에 대한 창립자나 창립 구성원으로서의 자본 출자
- 인도네시아에 설립되어 주소를 둔 기존 회사에 대한 자본 출자
- 인도네시아 내 고정사업장의 활동을 이행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고정사업장이 사용할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 인도네시아 내 고정사업장의 활동을 이행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고정사업장이 사용할 무형 재화에 대한 투자

준수사항

인도네시아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해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외국회사는 일반적으로 일반납세자와 동일한 세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반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회사는 소득을 지급하는 인도네시아 납세자로부터 원천징수를 당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세금 징수는 자가진단시스템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인 납세자의 경우 월 선납법인세는 익월 15일까지 납부하며, 익월2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연간 법인세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연간 법인세 납부세액은 신고서 제출 전까지 확정되어야 한다.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월 선납 법인세 및 기타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 초과납부세액은 반드시 세무조사 이후에 환급 처리가 된다.

이중과세경감

Unilateral relief

해외 소득이 있는 거주 기업은 해당 소득에 대해 해외에서 지불한 세금에 대해 공제를 받는다. 세금공제는 인도네시아 세법 규정에 따른 한도 규정 적용을 받는다.

조세조약

인도네시아는 광역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이 조세조약들은 OECD 모형을 따르며 OECD의 정보교환 준수 조항을 포함한다. 조세 조약은 일반적으로 모든 유형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limit the taxation by one country of companies resident in the other, 그리고 타국의 차별적 과세로부터 해당국가의 납세자를 보호한다.

조세조약 하의 보호를 받고자 하면 외국 납세자는 본질 및 행정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본질적 요건은 일반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외국 납세자가 관련 조세 조약상의 수익적 소유자 요건에 해당하는 이익, 배당금, 로열티 등 특정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추가 조건도 충족하여야 한다 (일반조세회피방지 규정 참고). 행정 요건 충족을 위하여, 외국 납세자는 적시에 완료하고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Form DGT-2는 특별히 금융기관 또는 연금 기금 또는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에서 소득을 얻는 회사를 위한 것이다. 거주자증명서는 조약 동반 국가의 과세당국의 확인 받아야 한다. 확인을 받지 못한 외국인 납세자는 조약 동반 조세 당국이 보통 검증하거나 발행하는 어떤 유형의 거주자 증명서든 사용할 수 있다 (특정 요구 조건들이 충족). 이 서류는 작성된 Form DGT-1 또는 Form DGT-2에 첨부되어야 한다. 이 요구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외국인 납세자는 조세조약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인도네시아 조세조약 네트워크

알제리	홍콩	뉴질랜드	수리남
호주	헝가리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리아	인도	파키스탄	스위스
방글라데시	이란	필리핀	시리아
벨기에	이탈리아	폴란드	대만
브루나이	일본	포르투갈	태국
불가리아	요르단	카타르	튀니지
캐나다	북한	루마니아	터키
중국	대한민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	쿠웨이트	세이셸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
체코 공화국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영국
덴마크	말레이시아	슬로바키아	미국
이집트	멕시코	남아프리카	우즈베키스탄
핀란드	몽골	스페인	베네수엘라
프랑스	모로코	스리랑카	베트남
독일	네덜란드	수단	아르메니아
라오스			

조세회피방지규정

일반 조세회피방지규정

인도네시아는 일반 조세회피방지규정이 없지만 외국 소득 수급자가 조세 조약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내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러한 조세 조약 남용 방지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기업 설립에 관련된 경제적 동기가 있다;
- 사업 활동은 경영진에 의해 자체적으로 관리되며 경영진은 충분한 거래 수행 권한이 있다;
-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을 창출하는 자산 이외에, DTA 파트너 또는 관할권 파트너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기에 충분하고 적절한 고정자산 및 비고정자산을 가지고 있다;
- 수행되는 사업 분야에 따라 특정 전문 지식을 갖춘 충분하고 적절한 종업원 수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하는 배당, 이자 및/또는 로열티 이외의 활동이나 기타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외국 납세자가 관련 조세 조약상의 조항에 따라 수익적 소유자 요건으로 규정된 수입을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a. 개인 외국 납세자의 경우 대리인이나 명의자로 행동하지 않는다; 또는
- b. 법인 외국 납세자의 경우 대리인 또는 명의자 또는 전달자로 행동하지 않으며 다음 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을 얻는 기금, 자산 또는 권리를 사용하거나 누릴 통제권을 가진다.
 - 다른 당사자에 대한 의무이행에 사용하는 소득은 50%이하이다.
 - 소유하고 있는 자산, 자본 및/또는 부채의 위험을 부담한다.
 - 서면 또는 불문법으로 인도네시아로부터 받은 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당사자에게 제공 할 의무가 없다.

상기 요건 중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할 시 조세 협약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이전가격과세

인도네시아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TP) 규정에 따르면 DGT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정상 가격 원칙(Arm's Length Terms)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의 해당 소득이나 비용을 재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기존에 적용된 계층적 토대를 대체하는 가장 적절한 TP방법론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전가격에 대해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위해 DGT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원칙을 적용과 관련된 No. PER-43/PJ/2010 ("PER-43") 및 PER-32/PJ/2011 ("PER-32") 규정을 공포하였다. 최근, 재무부는 OECD의 BEPS Action 13에 따라 3단계 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한 No. 213/PMK.03/2016 ("PMK-213") 규정을 2016년 12월 30일에 발표하였다. 3단계 접근방법은 마스터 파일, 로컬 파일 및 국가별보고서 (CbCR)에 해당한다.

PMK-213는 PER-32 또는 PER-43 규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따라서 PER-43 또는 PER-32 규정에 명시된 법조문은 PMK-213에서 규정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적용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납세자 중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이전가격문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항목	기준금액
직전과세기간 총 매출액	5백억루피아 초과
직전과세기간 상품거래금액 또는 직전과세기간 서비스, 로열티, 이자 또는 기타 거래금액	2백억 루피아 초과 5십억 루피아 초과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상대국 세율이 인니 세율(현행 25%)보다 낮은 경우	기준 없음

추가로, 지배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연결실체의 연결 총 매출이 11조 루피아 이상인 경우는 이전가격문서화 대상이다.

직전과세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총 매출 또는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은 연환산하여 적용한다.

루피아 이외 기장시, 재무부 (MoF)가 정하는 환율에 의거 상기 기준을 계산한다.

해당 법규는 납세자가 상기 기준에 해당 하지 않아 이전가격문서화를 준비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상가격 기준은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마스터파일과 로컬 파일이 과세 년도 종료일부턴 4개월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해당 문서들이 이용가능한 날이 포함된 진술서와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 진술서는 이전가격문서 제공자에 의해 서명이 되어야 한다.

또한 본 규정에 따라,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세법 및 법규에 규정된 기한 내에 마스터 파일 및 로컬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로컬 언어 즉 인도네시아어로 제출하여야 한다. 지연 제출의 경우 마스터 파일 및 로컬 파일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건주 한다. 제출 의무 불이행시 관련 법규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처벌 받게 된다.

신규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는 마스터 파일 및 로컬 파일의 개요를 규정된 양식으로 작성하여 법인세신고서에 첨부해야한다. 납세자는 마스터 파일 및 로컬 파일 개요에서 마스터 파일 및 로컬 파일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표명해야 하며 마스터 파일 및 로컬 파일이 이용 가능한 날짜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요는 존재한 특수 첨부 양식 (별첨 3A/3A-1 및 3B/3B-1)에 추가된다.

지배 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연결실체의 연결 총 매출이 11조루피아 이상인 납세의무자는 CbCR(국가별보고서)를 준비 및 제출 해야 한다.

지배 기업이 외국관할권하에 있는 경우, 해당 국가가 아래에 해당될 때 인니 납세의무자는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닌 경우
- 인도네시아 정부와 정보교환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협정은 체결되어 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해 국가별보고서를 득할 수 없는 경우

국가별보고서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시점까지 확보 가능한 자료와 정보에 기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정상가격기준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본 규정에 따라 국가별보고서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2개월이 내에 제공 가능해야한다. 최초 적용 연도는 과세연도 2016년이며 국가별보고서는

다음해 법인세신고서(i.e. 2017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별보고서는 PMK-213 의 별첨으로 규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양식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되는 BEPS Action 13과 일치하나 일부 추가 요구사항이 포함된다.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대체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일부로 상호 합의 (“MAP”) 및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APA”)를 발표했다.

Controlled foreign companies (CFC, 해외자회사)

CFC는 인도네시아 거주자 기업 또는 개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의 합이 50% 이상인(개인이나 다른 인도네시아 납세자와 같이) 외국법인이며 각각의 단계에 50% 기준치가 적용된다. CFC는 비상장 외국법인에게 적용된다. 인도네시아는 화이트리스트나 블랙리스트가 없다. CFC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재무부는 실제 배당이 선언되거나 가득되지 않은 경우 인도네시아 주주가 배당금을 언제 가득한 것으로 간주하는지 결정할 권한이 있다. 역외 회사로부터 배당이 선언되거나 가득되지 않은 경우 인도네시아 납세자는 간주 소득 배당금을 계산하여 신고해야한다.

-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의 배당금 수령 시점은 다음과 같다.
 - a. 해당 회계연도의 해외법인의 연간 법인세 신고기한 이후 4번째 달
 - b. 해당 해외법인에 연간 법인세 신고의무가 없거나 연간 법인세 신고기한이 없는 경우, 회계연도 말 이후 7번째 달

인도네시아 납세자의 지분 및 자산의 간접취득이나 처분

비거주자가 특수목적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하던 지분(조세피난처 소재 법인에 대한 지분)을 매각한 경우로서 당사자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동 거래는 비거주자가 지분을 직접 매각한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서 조세피난처라 함은 인도네시아 법인세율의 50%이하로 과세되는 국가 혹은 인도네시아와 정보교류협정이 되어있지 않은 국가를 말한다.

인도네시아 법인/개인이 특수목적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3의 인도네시아 납세자의 지분이나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동 법인/개인과 특수목적회사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되거나 부적절한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동 취득은 인도네시아 법인/개인이 제3의 인도네시아 납세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보 교환 규정

각국이 조세회피 또는 탈세 식별을 하는 데 그리고 국가간 조세불복 해결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국가간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 교환은 다음과 같은 것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

1. 이중과세협정/조세조약
2. 조세정보교환협정
3. 다국간 협정
4. 다자간 관할 기관 협정
5. 정부간 협정
6. 기타 다자간 협정

OECD의 BEPS 프로젝트

인도네시아는 OECD(경제 협력 개발 기구)의 멤버가 아니지만 G-20 국가들의 멤버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옵서버로 그리고 공헌자로 BEPS 프로젝트에 전적으로 참여해 왔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자기 BEPS의 양식을 발행할 것이며 현재까지 재무부 장관이 발행한 변동의 규정이 없다. 다음 표는 BEPS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인도네시아가 취한 조치를 요약한 것이다.

Action	이행
디지털 서비스의 고객에 대한 사업 부가가치세 (Action 1)	미확정
Hybrids (Action 2)	미확정
CFCs (Action 3)	인도네시아는 이미 CFC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배당에만 국한되어 있다.
이자 공제 (Action 4)	로컬 과소 자본 규칙은 부채를 기반으로하며 BEPS에서 권장하는 고정 또는 그룹 비율과는 대조적으로 지분법 (대차대조표 시험)이 포함된다.
유해한 세금 관행 (Action 5)	미확정
조약 남용 방지 (Action 6)	인도네시아는 조약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
영구 설립 상태 (Action 7)	미확정
이전가격 (Actions 8-10)	2013년에 발행된 규정에 따라 납세자는 OECD 이전 가격 가이드라인에 따라 과세 소득 할당을 가치 창출에 맞추기 위해 지적 재산권 개발 당사자의 역할을 증명해야한다. Actions 8-10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이행 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다.
공격적인 세금 계획 공개 (Action 12)	미확정
이전가격문서화 (Action 13)	재무부장관은 2016년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조세 연도에 대한 3단계 수준의 문서화 요구 사항을 도입했다. 요구 사항은 대체로 Action 13권장 사항에 따라 마스터파일과 로컬 파일 모두에 추가 정보를 요구한다. 본 서류는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과세 연도 말부터 4개월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이전가격 책정 규칙의 범위 내에서, 문서화 요구 사항과 국내 관련 당사자의 포함을 결정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점이 존재한다.

Action	이행
국가별보고서 (Action 13)	<p>국가별보고서는 특정 추가 세부 정보가 포함된 Action 13 요구 사항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2016년1월1일후부터 시작하는 조세 연도에 적용된다.</p> <p>모기업이 외국 관할 구역에 있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인도네시아 납세자는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별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는 • 인도네시아 정부와 정보 교환을 하지 않다; 또는 • 합의했으나 국가별보고서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얻을 수 없다. <p>국가별보고서 관련하여,세무 당국에서 실행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p> <p>인도네시아는 국가별 보고서 자동 교환을 위한 다자간 권한 있는 협약에 서명 한 국가 중 하나이다.</p>
분쟁 해결 (Action 14)	미확정
다자간 협약 (Action 15)	<p>인도네시아는 2017년6월7일에 MLI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방지에 대한 조세 조약 관련 Action을 이행하기 위한 다자 협약)에 서명하고 MLI 지위 (예약 및 통보 목록)를 제공했다.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아는 잠정적으로 혜택에 대한 PPT와 단순 제한(LOB)을 선택했다.</p>

Taxes on certain businesses

샤리아 산업의 법인세

대체로 이슬람 금융과 전통적인 금융의 근본적인 차이는 이자 금지이다. 샤리아법에 이자가 금지되어 있지만 다른 투자수익(예를 들어 계약을 맺을 때 계약 당사자들이 일치하는 렌탈 또는 이익)을 보장한다. 샤리아 율법을 준수하는 제품에 관하여 이슬람 금융에 대한 대부분의 토론은 이자금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투자에 대한 것이다.

전통 은행 또는 금융 서비스(필요한 부분만 약간 수정함)가 받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소득세법에 명시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처리는 샤리아 비즈니스 활동에도 적용된다. 샤리아 은행과 샤리아 금융 서비스의 세금 처리는 다음과 같다.

샤리아 은행

소득 수령인	소득 유형	세금 처리
은행	이용 고객과의 거래로부터 받는 보너스, 이익 분배, 마진	이자로 간주
	그 외의 기타 소득	일반적인 소득세법에 따라 처리
투자자 /예금고객	위탁펀드로부터 받는 보너스, 이익 배분 및 기타 소득, 해외 샤리아 은행의 지점이나 인도네시아 샤리아 은행을 통해 이루어진 해외 투자	이자로 간주
	그외 기타 소득	일반적인 소득세법에 따라 처리

샤리아 금융 서비스

거래 유형	세금 처리
리스 (Ijarah)	일반적인 운용 리스와 같이 처리. 리스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음
금융리스 (Ijarah Muntahiyah Bittamlik/IMB)	선택권이 있는 금융 리스와 같이 처리, 리스 자산은 과세상 감가상각을 하지 않음
팩터링 (Wakalah bil Ujarah)	이익이나 수익은 이자로 처리.
소비자 금융 (Murabahah, Salam, Istishna)	이익이나 수익 마진은 이자로 처리
신용카드	수수료나 기타 소득은 일반적인 소득세법에 따라 처리.
그 밖의 샤리아 금융	수수료나 기타 소득은 일반적인 소득세법에 따라 처리
기업금융 (Mudharabah, Mudharabah Musytarakah, Musytarakah)	이익이나 수익 분배는 이자로 처리
자산의 전달 (공급자에서 최종 이용자에게 직접 전달된 경우를 고려)	일반적인 소득세법에 따라 처리

업스트림 석유 및 가스 세금

석유 및 가스 활동은 국가가 관리하고 광업청의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가 실시하는 것이다. 경영협력계약의 가장 흔한 형태는 생산물분배계약(PSC)이다. 한 개 회사는 한 PSC에게만 맺을 수 있거나 한 PSC에만 participating interest을 갖고 있을 수 있고 이 회사는 법인 납세자 등록 번호(ring fence principle)를 획득하여야 한다. Ring fence principle 아래 PSC를 맺는 법인의 탐사 비용 또는 손실은 PSC 산하 법인에 양도, 사용 또는 양수가 금지된다.

경영협력계약은 lex specialis(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 보통 인도네시아 소득세법의 원칙에 우선한다.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들어 있지 않은 사항만 일반 세법에 언급한다.

PSC 하의 투자 및 지출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업무 계획, 예산, 및 정부가 승인한 재정지출의 결재에 맞춰 계약업체는 소요된 원가를 보전 받는다 (원가보상방식).

보통 PSC 계약업체는 생산에서 운영비용을 회수한다. 특정 연도에 운영 비용이 생산된 원유 또는 가스 가격은 초관할 경우 미회수 운영비용은 차기년도에서 회수한다. 계약서에 언급되어 있는 생산 분배에 따라 남아 있는 원유와 천연 가스는 정부와 PSC 계약자 사이에서 공유된다.

통일 원칙은 업스트림 경영에 사용된다. 이 원칙은 세무 목적으로 손금산입 비용의 혜택은 PSC의 관점에서 PSC 계약자가 정부로부터 회수된 비용과 비슷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반대로도 그렇다.

업스트림 계약자는 세금공제이익에 대한 법인세와 최종분리과세(예를 들어 지점 수익세)의 적용을 받는다. 정부규제 (GR) No. 79/2010를 발행하기 전에 완료된 PSC의 법인세와 지점수익세비용은 PSC들이 체결될 때 우세한 소득세법을 참조하고 PSC들의 계약유효기간동안 여전히 유효하다. GR-79/2010후에 체결된 PSC들은 계약자가 계약서를 체결될 때 적용된 소득세 비용을 쓸 것인지 아니면 시간 경과에 따른 세율 변경을 따를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2017년1월 정부는 석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Gross Split PSC 체제를 도입했다. 이 PSC의 근본적인 변화는 총 생산량이 정부와 계약 자간에 분배되며 결과 적으로 기존 PSC와 마찬가지로 First Tranche Petroleum (FTP), 비용 회수 또는 이익 분배를 위한 생산 할당이 없을 의미한다.

광산에 대한 세금

석탄과 광물 자원의 탐사 및 발굴의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력을 위해 2009년 이전에 외국인 투자자는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업스트림 석유 및 가스업의 경영협력계약과 같은 도급은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 세법에 우선하며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만 일반 세법에 언급한다.

Generation of contract 에 따라서 계약의 과세 조항은 보통 계약유효기간 내에 여전히 유효 된 이익에 대한 법인세 계산(예를 들어 법인세율, 손금산입 비용, 등) 과 다른 납세의무를 규정한다. 다른 계약은 세법의 원칙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각 계약의 세밀한 분석은 구체적인 mining contract의 적당한 과세를 결정하기에 필요하다.

광물 및 석탄 광업법 No. 4/2009 이후 계약 광구는 더 이상 없다. 외국인 투자자는 광업 허가권(Ijin Usaha Pertambangan/IUP)을 얻어야 광업을 할 수 있다. IUP 소지자는 일반 세금 체제에 따른다.

해양굴착기업

석유 및 가스 시추업을 하는 외국기업은 총수입의 15%를 이익률로 간주한 세금이 부과된다(유효소득세율의 3.75% 결과가 되고 인정과세 표준율에 고려함). 석유 및 가스 시추업을 하는 국내기업은 일반 세금 체제에 따른다.

벤더 및 서비스 제공 업체

건설업 및 운송업 등과 같은 PSC 및 mining contractors에 어떤 제공자는 보통 총수입의 일정 퍼센트에 대해 세금 부과 받는다. 다른 미드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제공자는 보통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 받는다.

국산품

PSC 계약업체는 국산품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불채용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PSC 계약자는 상품, 설비, 또는 서비스를 수입하지 못 한다. 결과적으로 외국인 공급자는 PSC 계약자와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떤 때는 PSC 맺을 수 있도록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국내 서비스 공급자의 하도급업자가 되거나 하도급업자와 협력한다.

4. 개인 조세

인도네시아 개인 조세 현황	
소득세율	5%-30%
양도소득세율	0.1% - 30%
기본	전세계소득
이중과세방지	있음
과세연도	역년
반납 일자	3월 31일
원천 징수세 (인도네시아 원천 소득에 적용함)	
- 배당금	10% (거주자); 20% (비거주자)
- 이자	15%/20% (거주자); 20% (비거주자)
- 로열티	15%
부유세	없음
사회보장연금	1% - 4%
상속세	없음
토지 및 건물세	0.3%
토지 및 건물 취득세	5%
양도세	0.1%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양도); 5% (비거주자의 비상장 기업의 주식양도); 총수입이나 과세 매각가액 (중 높은 것으로)의 2.5% (토지 및/또는 건물의 양도)
발기인주식 IPO시	0.5%
부가가치세	10%

거주자

거주자는 12개월 중 183일 이상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자 또는 과세 기간에 인도네시아에 체재하고 거주할 의지가 있는 자로 정의한다. 비거주 납세자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할 예정이 없고 183일 미만 동안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비거주자는 세무 목적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과세소득 및 세율

개인 납세자는 전세계 총수입에 대해 세금을 부과 받고 허용된 공제와 비과세 소득은 공제 받는다. 비거주 개인 납세자는 인도네시아 원천 소득에 대한 세금만 부과 받는다.

과세소득

인도네시아의 개인 소득세는 국가 단위에서만 부과된다. 과세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즉, 소극적 소득 (배당금, 이자, 로열티), 양도 소득, 등 여러가지 소득을 포함한다. 전사원에게 적용되는 현물 수익은 직원에게 과세되지 않는다 (고용자에게 공제됨). 특정 사원에게 제공하는 현물 수익은 과세될 수 있다. 개인, 하도급업자, 하부자문회사, 하청공급자에 세금은 적용하지만 세금 경감은 허가 제공된 정부사업 아래에 계약 업체와 제공 업체에게 제공된다.

공제 및 경감

일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의 경우 소득공제가 된다. 아래의 개인소득공제 항목들은 인도네시아 거주자인 개인납세자별로 달리 적용된다.

공제 근거	공제금액 (연단 위)
본인	IDR 5,400만
배우자	IDR 450만 (부부합산 소득이 있는 아내의 경우 IDR 5,400만 추가공제)
부양가족	IDR 450만 (최대 3명까지 각각 공제)
직책 수당	최대 IDR 600만까지 총소득의 5%
연금 납부 (연금 수령자에게 적용)	최대 IDR 240만까지 총소득의 5%
승인 받은 연금펀드 분담금(e.g BPJS)	본인 분담금 총액
의무 십일조 ("zakat") 또는 종교 기부금	실제 발생 금액으로서 관련 증빙이 적법하면서 요구조건을 만족한 경우

재무부는 위의 인적공제금액을 재계산할 권한이 있다. 상기 개인소득공제 항목들은 2016년6월에 공표되었으며, 2016년1월부터 적용가능하다.

세율

과세 소득	세율 ⁽¹⁾
IDR 50,000,000만 이하	5%
IDR 50,000,000만 초과 IDR 250,000,000억 이하	15%
IDR 250,000,000 억 초과IDR 500,000,000억 이하	25%
IDR 500,000,000억 초과	30%

상속세 및 증여세

인도네시아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유세

인도네시아는 부유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규정준수

역년은 과세연도다.

인도네시아는 납세자가 자기 조세 채무를 산출 및 신고 의무를 요구하는 자진 납세제도이다. 하지만 비과세 수입보다 더 적은 소득을 받는 납세자는 신고가 필요하다. 신고서는 과세 연도 말 이후 3월31일까지 제출되어야 하고 어떤 연간 세금이라도 신고서 제출하기전에 지불되어야 한다.

특정 상항의 납세자는 전년도 조세 실적에 근거하여 매월 선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각 지불은 익월 15일까지이다.

5. 간접세

부가가치세 (VAT)

Value Added Tax(이하 "VAT")는 각 생산 단계 및 디스트리뷰션체인에 부과되고 재화의 공급 및 용역 제공에 10%의 표준 세율로 부과된다. 과세물 및 특정한 과세서비스의 수출에 대한 VAT는 없다. VAT가 없는 수출 서비스는 위탁생산 서비스, 인도네시아 관세징수지역밖에 이용하는 동산에 대한 수선 유지 서비스, 및 인도네시아 관세징수지역밖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건설 서비스로 한정된다.

무형자산 (로열티 포함) 및 사실상 모든 인도네시아의 사업(예를 들어 수입 서비스)을 위하여 인도네시아외부에서 인도네시아 내부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VAT가 적용된다. VAT는 모든 제품에 (현지생산품이든 수입품이든)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제조는 물건의 원형을 변화시키거나 신제품을 창조하거나 생산성을 증가시키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이것은 제조, 요리, 조립, 포장, 및 보틀링을 포함한다.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특정 요구 사항에 따라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상회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의 초과 납부는 세무 조사가 수행 된 후에 이월되거나 회수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는 각 월별 세금 환급을 청구 할 자격이 있는 특정 VATable Entrepreneur를 제외하고는 과세 연도 말에 만 가능하다.

특정 수입 또는 구매는 부가가치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 기계, 공장 장비 등과 같은 전략 상품;
- 보세 구역 내에 있는 회사의 가공 원료;
- 과세 대상 물품의 보세 구역으로의 인도 및/또는 수입;
- NIPER (KITE면제 시설의 ID 번호)를 취득한 제조업체가 수출 목적으로 다른 물품을 가공, 조립 또는 설치하는 데 필요한 식품 및/또는 재료 수입;
- 외국 원조로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 장비 및 기타 물품의 수입 및 인도;
- 국영 선사 또는 항공사 등 특정 산업의 회사가 수입 및 구매;
- 의무가 면제되는 특정 물품의 수입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공급 받는자에게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하기 위한 수단이다. 2016년7월1일부로 모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도록 규정되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우선 국세청에 활성 코드 및 비밀번호, 그리고 전자 증명서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이 지정한 전자시스템을 통해 발급, 재발급, 취소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인도네시아 루피아로 기재되어야 하고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전자시스템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특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초과 납부로 인한 환급세액은 반드시 세무조사를 거친 후 환급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은 과세연도가 종료된 후 가능하지만, 월별 환급 신청이 가능한 사업자는 예외로 한다.

월별 부가가치세 신고는 익월 말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납부세액(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은 신고서 제출 전에 확정되어야 한다. 인도네시아 보세 구역을 통해 해외로부터 수입한 무형의 재화나 용역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자가신고대상이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익월 15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VAT grouping concept 이 없다. 다른 tax office jurisdictions 에 위치하는 하나 이상의 지점이 있는 회사는 VAT지불 및 VAT신고의 일원화를 요청할 수 있다. 일원화는 보통 본사가 신청하지만 어떤 특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점단위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본세

자본세는 없다.

부동산세

재산세는 토지, 건물, 및 영구 구축물에 대해 연간 지불한다. 서울은 보통 부동산 가치의 0.3% 이하지만 고가의 주택과 대규모 부동산에는 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매매가액의 특정 비과세 해당분은 동 세액에서 제외된다.

개인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를 하는 경우 거래금액 기준 2.5%의 세금이 부과된다. 토지 및 건물을 상속이나 증여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개인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보다 적은 연소득을 가진 개인납세자가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로서 그 가치가 Rp. 6천만이하인 경우 등은 비과세된다.

비과세 기준 금액인 Rp. 8천만 이상의 가치를 가진 토지 및 건물을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 최대 5%의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 동 취득이 상속의 형태인 경우에는 비과세 기준 금액은 Rp. 3억으로 적용된다.

양도세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매매 시 0.1%에 세금이 부과된다. 장립자 주식 또한 IPO시 지속 보유 또는 매각에 상관 없이 주식가격의 0.5%에 대해 최종 분리 과세된다.

인도네시아 비상장주식의 비거주자 양도시 양도가의 5%에 대한 원천세가 부과된다. 단 조세 협약이 있을 경우 해당 협약이 우선한다.

토지 및/또는 건물의 일부 처분은 거래가의 2.5%에 해당하는 최종 세금이 부과된다.

토지 및/또는 건물의 취득세는 취득 가치의 5% 또는 NJOP중 높은 것이며, IDR 60 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 할 때 부과된다. 합병과 관련된 양도 및 친척 송금과 같은 다양한 면제가 적용된다.

인지세

인지세는 금융거래, 공증 및 영수증에 적용되며 거래액 및 문서 종류에 따라 IDR 3 천 또는 6천이다.

관세 및 소비세

해외에서 인도네시아 관세 영역에 들어온 모든 물품은 수입품으로 취급하고 이 수입되는 물품에는 기본적으로 수입세가 부과된다. 수입자는 무역부에 등록해서 수입허가증(API)을 발급받고 관세 청국에 등록해서 관세청등록번호(NIK)를 발급 받아야 한다.

특정한 면제(예, 수출목적으로 보세구역 또는 보세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한 Import facility)가 적용된다.

자유무역협정 (FTA) 및 경제협력협정(EPA)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특혜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FTA/EPA동반국가에서 수입된 특정 수입품의 관세가 더 낮거나 완전히 제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특혜관세에 다음과 같은 제도를 두고 있다.

- a. 아세안물품무역협정 (ATIGA): 이는 아세안 국가와 인도네시아사이의 협정에 근거하는 특혜관세다. 이 관세는 아세안 국가에서 인도네시아 수입품에 적용된다.
- b. 아세안-중국 FTA (ACFTA): 이는 중국과 자유무역지역 설립을 위한 아세안 국가 사이의 협정이다. 중국은 특별 행정구(홍콩과 마카오) 및 대만을 빼고 중국 본토를 의미한다.
- c. 아세안-한국 FTA (AKFTA): 이는 경제협력을 위한 아세안 국가와 한국 사이의 협정이다.
- d. 인도네시아-일본 경제동반자협정 (IJEPA): 이는 경제협력과 무역 및 투자

증가를 위한 인도네시아와 일본 정부 사이의 협정이다.

- e.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AANZFTA): 이는 호주와 뉴질랜드와 자유무역지역 설립하기로 아세안 국가들사이의 협정이다.
- f. 아세안-인도 FTA (AIFTA): 이는 인도와 자유무역지역을 설립하기로 아세안 국가들사이의 협정이다.
- g. 인도네시아-파키스탄 정부, 수입관세 조건. 이 조건은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 정부 사이의 특혜 무역 협정(PTA)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만들었다.

정부는 특정 물품의 유통을 억제하기 위하여 특정 물품에 대해 소비세를 부과한다. 소비세는 주로 알코올 제품과 담배 제품에 부과된다.

물품이 관세 지역(항구)에서 반출되기 전에 미지급 관세 및 수입세를 결제하여야 한다. 조건을 지키지 못 하는 경우에는 과소납부액에 따르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 최고의 과태료는 과소 납부의 1000%이다.

환경세

인도네시아 중앙 정부는 구체적인 환경세가 없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서 특정한 수자원에 폐수를 버리는 허가에 대해 지방 정부는 과세할 수 있다.

사치품 판매세

사치품 세는 부가가치세 이외에 다양한 상품에 대해 10%에서 125%까지 부과된다. 세금은 수입 시 또는 제조의 경우 생산 회사가 명품을 배달 할 때 부과된다.

6. 원천 징수세

배당금

주식소유 25% 미만인 경우는 15%의 원천세가 적용된다 (선납 법인세).

비거주자에게는 20%의 원천세가 적용되며 최종 분리 과세된다 (단, 조세 협약이 있는 경우는 예외)

이자

거주하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지불되는 이자는 과세 면제 받는다.

비거주자에게 지불되는 저축예금과 예금 계정에 대한 이자에 20%의 원천징수세가 적용된다. 단, 인도네시아 은행과 외국은행 인도네시아 지점으로부터의 이자는 회사들과 개인들에 20% 최종 분리 과세된다.

로열티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로열티에는 1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고 해외 송금과 같은 경우 세율이 20%이다. 세무 목적상 로열티는 인도네시아의 재산 또는 노하우 사용 및 재산권 또는 노하우 사용 관한 이전을 포함한다.

개인소득세/사회보험부담

고용주는 직원의 급여와 다른 보수에 대한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공제하고 감면할 책임이 있다. 고용주는 월 단위로 고용원천징수세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인과 피고용인은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환경” 섹션을 참조.)

기타

기술업, 관리업, 컨설팅, 기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2%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납세자번호가 없는 납세자의 경우 100%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토지 및 건물 임대 관련 국내 지급액에 대해서는 10%의 최종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절차규정

배당, 이자, 로열티, 임대료, 전문서비스, 기술서비스, 관리서비스, 건설 서비스 등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한다. 만약 소득의 수취인이 인도네시아 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동 거주자의 기납부세액을 구성하고, 비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최종납부세액이 된다. 배당, 이자, 로열티와 기타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익월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종업원이나 하청업체로부터 원천 징수한 세액은 익월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 신고는 익월2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E. 회계감사 및 컴플라이언스

인도네시아 회계 기준원(DSAK-IAI)이 발행한 인도네시아 기업회계기준 (PSAK)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인도네시아 회계기준에 따른 연간 재무제표작성을 위해 회계 기록을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지분 소유권 변경은 주주명부 및 특별한 레지스터에 기록되어야 한다. 장부 마감 6개월 이내에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연간 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연간 보고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한다.

1. 감사된 재무제표
2. 회사의 상태와 성과에 대한 보고서

1. 회계년도

회계년도는 보통 12개월이고 일반적으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역년을 이용한다. 하지만 회사는 1월1일부터 시작하지 않은 회계 연도를 선택할 수 있다.

2. 통화

회사는 기능 통화를 이용해서 회계장부와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하지만 회사는 기능통화 아닌 다른 통화를 이용해서 재무제표 (presentation currency)를 제출할 수 있다. 기능 통화는 회사가 운영하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다. 이것은 보통 물품과 서비스의 매출 가격이 결정되는 통화다.

인도네시아에의 기업 실제 대부분의 기능 통화는 루피아(IDR)지만 인도네시아에 IDR아닌 다른 통화를 이용하는 회사도 있다.

3. 언어와 회계 기준

한 회사는 인도네시아 언어로 회계장부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인도네시아 아닌 다른 언어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

현금흐름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 회사는 발생주의회계를 이용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발생주의회계를 통해서 거래 발생시 이를 인식한다. 회사는 정의 및 인식 기준에 따라 자산, 부채, 소득, 비용을 인식한다. 회사의 회계장부와 재무제표는 DSAK-IAI가 발행하는 SAK를 준수하여야 한다.

공적 책임이 없는 회사는 별도의 SAK(완전한 SAK보다 더 간단함)를 적용할 수 있다.

4. 감사 요구 사항

다음과 같은 회사 종류는 전문감사인인 감사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장회사
- 은행, 보험, 등 공공기금을 축적하는 회사
- 채권발행회사
- 50조 IDR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회사
- 채권 은행이 요구하는 경우 채무 회사
- 인도네시아에서 사업권을 획득한 특정 외국기업
- 특정 국영기업

인도네시아 공인회계사회(IICPA)가 공표하는 감사 기준에 의거하여 감사를 한다. 회계연도로 3개월 이내에 공개 기업은 감사재무제표를 자본시장regulator - 금융감독원(OJK)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간 감사 재무제표의 금융감독원 (OJK) 제출은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마감후 1개월 이며 review인 경우 2개월이며 감사를 받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제출한다. 미감사중간재무제표는 날 후에 한 달 이내에 OJK에 제출되고 검토중간재무제표는 2달 이내에 제출되고 감사중간제표는 3달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5. 독립성

인도네시아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사의 윤리규정에 부합되고 이해의 대립을 피하기 위하여 회계사는 독립을 유지하여야 한다. OJK가 발행하는 상장고객사의 회계사에 대한 독립성 규정을 포함하여 회계사는 정부(예: 재무부)가 발행하는 관련 독립성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은행, 보험, 금융 회사, 연금 기금 및 기타 금융 서비스 기관과 같은 OJK 규정에 의거한 법인의 감사인에게 적용된다.

OJK 규정 13/POJK.03/2017은 매3년마다2년의 냉각 기간을 두어 공인 회계사의 강제 순환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 교대는 회계법인이 아닌 공인 회계사에게 적용된다.



F. 노동환경

1. 직원 권리 및 보수

2003년 No. 13 노동법은 근로자들의 교섭권, 최저근로조건 및 해고 및 보상 금지불 관련된 규정을 정하고 있다. 비록 노동법이 근로자의 파업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합법적이며 질서 있고 평화로운 파업에 한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단체협약 및 집회 권리, 동일업무에 대한 남녀 동일임금, 강제노동, 단체 결사의 자유 및 집회권리보호 등을 포함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주요 조약을 비준했다. 고용 최저 연령에 대한 국제노동조약 138은 인도네시아법에 반영되어 있으며 아동노동착취 금지에 대한 국제노동조약 182는 2000년에 인도네시아 법에 비준 및 편입되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고용, 노동안전위생, 작업능력표준, 연장근로기준 및 수당에 대한 법령을 포함하는 노동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2. 급여 및 복리후생

주정부 임금 위원회는 각 주 및 시/군 최저임금을 정한다. 이 심의회는 인력이주부, 노동조합, 경영자 협회 및 학계 대표로 구성된다. 최근 몇 연관은 인플레이션 수준의 임금인상이 있었으며 통상 시/군 최저임금이 주정부 최저임금보다 높다.

임금은 최저임금, 잔업수당, 의병 및 휴무 급여, 등을 포함한다. 현금 급여액은 최소 75%를 이어야 하며 나머지는 보통 음식 및 교통비를 위해 할당된다. 국내 회사 대부분은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급여를 지불한다.

복리후생은 연차 유급휴가(보통 일년에 12일) 및 국경일, 종교적 의무, 가족의 의무(결혼 포함)를 위한 유급휴가, 출산 유급휴가, 및 병가로 구성된다.

해고 또는 퇴직 시 보상금이 지급된다. 사원은 1개월급여로 THR라는 명절 상여금을 받는다. 명절 상여금은 Lebaran(Ramadhan 기말)전에 무슬림에게 지불되고 크리스마스 전에 기독교 신자에게 지불되고, Nyepi 날 전에 힌두교 신자에게 지불되고 Waisak날 전에 불교 신자에게 지불된다.

연금 및 사회보험

사회보장기관(BPJS) 종류는 BPJS Manpower 및 건강보험(BPJS Healthcare) 2가지가 있다. 이 두 프로그램의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불한다.

BPJS Manpower의 새로운 제도는 2014년1월1일에 시행되었지만 일반적으로 이전(Jamsostek)을 계속하는 것이고 보험료는 여전히 Jamsostek의 보험료(사용자가 0.24%~1.74%를 지불하는 산재보험, 사용자가 0.30%를 지불하는 사망보험, 사용자가 3.70% 근로자가 2.00%를 지불하는 퇴직연금이 있다.

새로운 건강관리제도는 이전 건강관리제도를 대체하고 2019년1월1일에 완전히 의무사항이 될 예정이다.

2015년1월1일까지 대,중,소 기업은 BPJS 건강보험에 기업과 근로자를 등록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사원의 월급의 5%(2015년1월1일-2015년6월30일사이에 4.0%는 사용자가 지불하고 0.5%는 근로자가 지불함)이다. 2015년7월1일부터 보험료는 근로자 월급의 5%(4.0%는 사용자가 지불하고 1%는 근로자가 지불함)으로 될 것이다. 보험료 결정을 위한 사원 월급의 cap은 인도네시아 tax exemption amount (married with one child)의 2배 또는 한 달에 IDR 8백만이다. 의무적인 보험료는 남편, 아내, 2자녀가 보험 적용된다. 추가 식구는 추가보험료로 보험 적용될 수 있다.

현재의 규정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적어도 6개월간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타 혜택

개별협상 또는 단체교섭을 통해 기타 복리후생들이 결정된다. 여기에는 보통 가족수당 및 생계 비수당, 사원과 가족의 무료 진료제도, 주택, 교통 그리고 작업복 포함된다. 많은 회사는 연금 혜택을 제공한다. 임원들은 보통 회사 차량 및 annual home leave와 같은 추가 혜택을 받는다.

3. 근로 관계 해지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한 사원해고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가 있다. 생산 단축이 필요하거나 직원이 부적당하다고 여기더라도 고용자와 직원 사이의 해고 보상금 정리가 없으면 사용자가 사원을 해고시킬 수 없다. 합의를 달성하지 못 하면 사용자는 인력이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퇴직급여는 직원 월급 1-9배인(근무기간에 따름) 해고 보상금 및 근속 보상금(근무기간에 따라 10개월까지)으로 구성된다. 근로 관계 종료 시 잔여휴가급여 및 해고 보상금 총액의 15%에 해당하는 주택 및 의료보상금이 있다.

4. 노사관계

특정기간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통상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근로계약은 1년간-3년간 노동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사원 대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51% 이상의 지지를 획득한 노동조합은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노동 분쟁은 주단 위 노동분쟁 법원에서 해결된다.

5. 외국인 고용

인도네시아인이 수행할 수 없는 업무이며 외국인 인도네시아인 교육 제도가 제공되는 경우에 한해서 외국인 고용이 허가된다. 통상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도네시아인이 할 수 없는 업무라고 판단하면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 하지만 외국인은 특정 업무에 고용될 수 없다.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4종류로 구분된다.

1. 전문가
2. 관리자
3. Supervisor
4. 기술자

상기 모든 외국인은 취업허가 필요함.

외국인이 적어도 학사학위가 있어야 하고 인도네시아인 후계자(이사 및 감사 제외)가 있어야만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할 수 있다. 일반 비율은 1:1 (외국인 근로자 1명당 인도네시아인 1명)이지만, 법인 및 기업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해당 인도네시아인 직원의 인도네시아 신분증 사본과 직무 기술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허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를 초장하기 전에 인력이주부에 mandatory report, 직원복지보고서, 국외 거주자 사용계획 (RPTKA) 인력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들에 1년간 외국인 근로자 position, position 별자격, 및 인도네시아인 직원을 위한 훈련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갱신 과정에서 회사는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직원에게 지식을 이전했음을 증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승인된 인력 계획에 따라 인력이주부는 개별취업허가를 발행한다. 취업허가신고의 승인은 3개월 소요된다.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대상의 모든 직위에 대하여, 노동부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얻어야 한다.



About Deloitte

As one of the largest professional services network, we will bring all the power of global network to serve you while continuously investing in our relationship. Deloitte is one of the world's largest professional services network. What does that mean for you? It means we can offer you access to an unrivalled pool of technical and industry specialist and support you wherever you go in the world.

Our vision is to make an impact that matters: Every day we challenge ourselves to do what matters most - for clients, for our people, and for society. Deloitte Global organisation.

Deloitte provides audit,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advisory and tax services to public and private clients spanning multiple industries. With a globally connected network of member firms in more than 150 countries, Deloitte brings world-class capabilities and deep local expertise to help clients succeed wherever they operate.

More than 245,000 Deloitte's professionals are committed to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Our member firms serves more than 79 percent of the world's largest companies, as well as large national enterprises, public institutions, locally important clients, and successful, fast-growing global companies. We audit nearly 20 percent of the companies with assets that exceed US\$1 billion.

More than
245,000 people in more than 150 countries globally across 725 offices

US\$36.8bn global revenues in FY16

6,340 people on international assignments in FY15
Almost **8000** people in 25 offices across Southeast Asia

46,000 staff and partners in Asia Pacific
72,000 people hired globally in FY16

About Deloitte Southeast Asia

Deloitte Southeast Asia Ltd – a member firm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comprising Deloitte practices operating in Brunei, Cambodia, Guam, Indonesia, Lao PDR,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and Vietnam – was established to deliver measurable value to the particular demands of increasingly intra-regional and fast growing companies and enterprises.

With a team of over 330 partners and 8,000 professionals in 25 office locations, Deloitte Southeast Asia specialists combine their technical expertise and deep industry knowledge to deliver consistent high quality services to companies in the region.

We are one Deloitte for the Southeast Asia marketplace, and clients reap the benefit of our combined pool of expertise and specialist skills – whether it is our capital markets resources in Indonesia and Singapore or transfer pricing expertise in Guam – we can bring our strengthened team to deliver services in a seamless manner across the region.

Deloitte Southeast Asia practice allowed us to centralize and therefore strengthen our training and learning opportunities for both our people and clients alike. In addition, our size and scale gives us the ability to invest more heavily in local markets and to continue to offer innovative services and solutions where and when they are needed.

Deloitte Indonesia

In Indonesia, Deloitte is represented by the following:

- Satrio Bing Eny & Rekan, Registered Public Accountants
- Deloitte Touche Solutions, Tax Consulting
- PT Deloitte Konsultan Indonesia, Financial & Business Advisory
- PT Deloitte Consulting

Deloitte Indonesia now has over 80 Partners & Directors and over 1,200 Staff, located in Jakarta and Surabaya, serving companies listed in the Indonesian stock exchanges as well as multinational and large national enterprises, public institutions, and fast growing companies.

We have diversified client base which includes major multinationals, large national enterprises, public institutions, local important clients and successful fast growing global companies. Deloitte Indonesia clients come from major industries such as banking & finance, manufacturing, transportation, technology, media, telecommunications, retail & wholesale, oil & gas, mining, and life science & healthcare.



Contacts

Claudia Lauw Lie Hoeng

Country Leader

clauw@deloitte.com

Audit

Satrio Kartikahadi

Assurance & Advisory Leader

skartikahadi@deloitte.com

Bing Harianto

bharianto@deloitte.com

Eny Indria

eindria@deloitte.com

Merliyana Syamsul

msyamsul@deloitte.com

Tax

Melisa Himawan

Tax Leader

mehimawan@deloitte.com

Roy David Kiantiong

rkiantiong@deloitte.com

John Lauwrenz

jlauwrenz@deloitte.com

Financial Advisory

Edy Wirawan

Financial Advisory Leader

ewirawan@deloitte.com

Winawati Widiana

wwidiana@deloitte.com

Maria Christi Pratiwi

mchristi@deloitte.com

Risk Advisory

Brian Johannes Indradjaja

Risk Advisory Leader

bindradjaja@deloitte.com

Budiyanto

budiyanto@deloitte.com

Antonius Augusta

aaugusta@deloitte.com

Consulting

Iwan Atmawidjaja

Consulting Leader

iatmawidjaja@deloitte.com

Chinese Services Group

Dennis Li Yu Ying

Technical Advisor

+62 21 5081 9216

yuyli@deloitte.com

Hartono Laksana Widjaya

+62 21 5081 9240

hwidjaya@deloitte.com

Korean Services Group

Bang Chi Young

Technical Advisor

+62 21 5081 8191

bangchiyoung@deloitte.com

Bae Sung Eun

Technical Advisor

+62 21 5081 9215

baesungeun@deloitte.com

Japanese Services Group

Fenny Widjaja

Japanese Services Group Leader

+62 21 5081 8102

fwidjaja@deloitte.com

Koji Sugimoto

Technical Advisor

+62 21 5081 8829

kojisugimoto@deloitte.com

Daiji Murayama

Technical Advisor

+62 21 5081 8118

damurayama@deloitte.com

**Satrio Bing Eny & Rekan
Deloitte Touche Solutions
PT Deloitte Konsultan Indonesia**

The Plaza Office Tower 32nd Floor

Jl. M.H. Thamrin Kav 28 – 30

Jakarta 10350, Indonesia

Tel: +62 21 5081 8000

Fax: +62 21 2992 8200, 2992 8300

PT Deloitte Consulting

The Plaza Office Tower 30th Floor

Jl. M.H. Thamrin Kav 28 – 30

Jakarta 10350, Indonesia

Tel: +62 21 5081 9555

Fax: +62 21 2992 8022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a UK private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DTTL”), its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id/about to learn more about our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Deloitte provides audit & assurance,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advisory, tax & legal and related services to public and private clients spanning multiple industries. Deloitte serves four out of five Fortune Global 500® companies through a globally connected network of member firm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bringing world-class capabilities, insights, and high-quality service to address clients’ most complex business challenges. To learn more about how Deloitte’s approximately 264,000 professionals make an impact that matters, please connect with us on Facebook, LinkedIn, or Twitter.

About Deloitte Southeast Asia

Deloitte Southeast Asia Ltd – a member firm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comprising Deloitte practices operating in Brunei, Cambodia, Guam, Indonesia, Lao PDR,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and Vietnam – was established to deliver measurable value to the particular demands of increasingly intra-regional and fast growing companies and enterprises.

Comprising approximately 330 partners and over 8,000 professionals in 25 office locations, the subsidiaries and affiliates of Deloitte Southeast Asia Ltd combine their technical expertise and deep industry knowledge to deliver consistent high quality services to companies in the region.

All services are provided through the individual country practices, their subsidiaries and affiliates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About Deloitte Indonesia

In Indonesia, services are provided by Satrio Bing Eny & Rekan.

This publ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is, by means of this publ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entity in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publication.